

검 토 보 고 서

의안 번호	제8호
----------	-----

2019. 2. 21.

건명	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회계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 산 시 장	제안연월일	2019. 2. 13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9. 2. 13.

보 고 내 용

제안이유

- 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일부 개정을 통해 3급 관사의 관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.

주요내용

가. 임차한 공용주택 관사 포함

- 종전) 제50조(정의) 소유하는 공용주택
- 개정) 제50조(정의) 소유하거나 임차한 공용주택

나. 3급 관사의 관사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

- 종전) 제56조(관사 운영비의 부담) 1급내지 2급관사에 한한다
- 개정) 제56조(관사 운영비의 부담) 3급 관사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사 운영비 지원 가능

※ 참고) 1급관사 : 시장관사, 2급관사 : 부시장관사
3급관사 : 시설관리사, 그밖의 관사 등

검토의견

- 「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일부 개정을 통해 3급 관사의 관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5조 등 관계법에 위배됨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